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94
----------	-----

2023년 5월 3일  
교육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29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2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3일
3. 상정일자 :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 
(2023년 5월 3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오성배 기획조정실장)

### 1. 제안이유

- 2023. 7. 1.자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조정: 총계 변동 없음

- 4·5급 정원 감원: 감 2명 (9명 → 7명)

- 교육지원청 4·5급 정원 감원: 감 2명 (2명 → 0명)
- 4급 정원 증원: 증 2명 (40명 → 42명)
- 본청(직속기관 포함) 4급 정원 증원: 증 2명 (29명 → 31명)

### Ⅲ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694호로 제출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20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제출경위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(2023년 7월 1일자 기준)에 따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,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정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0월 17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

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출하였고,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개최된 5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였으나,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이유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.
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종전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(4·5급 정원 감2명, 4급 정원 증2명)과 동일하나,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.

#### 나. 정원 조정에 관한 검토

- 동 개정조례안은 [별표3]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’ 중 일반직 정원 총계의 변동 없이, 교육지원청 4·5급 정원 2명을 감하고, 본청(직속기관 포함) 4급 정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[표-1]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

구 분		현 재(명)			증감(명)		
		계	본청	교육지원청	계	본청	교육지원청
일반직	4급	40	29	11	42	31	11
	4·5급	9	7	2	7	7	-
	일반직 계	7,125			7,125		
지방공무원 전체		7,722			7,722		

- 이처럼 동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일반직 정원의 총계 변동 없이 4·5급 복수직<sup>1)</sup>의 소속기관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, 교육행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

1)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[별표2] 비고 1,2,4에 따라 정책감사팀, 성과·평가·통계팀, 공익1팀, 학교법인팀 등 4명의 무보직 서기관과 직속기관 중 연수원 교육행정지원과장,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, 학생체육관장 등 3명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4·5급 복수직이 있음.

록 위임<sup>2)</sup>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원 조정은 법령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다만 동 개정조례안에서 감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4·5급 2명은 증원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(서부,강동송파)의 업무 부담을 해소한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정원<sup>3)</sup>이었는바, 비록 당시 확보된 정원이 사정변경에 의해 그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정원의 조정 목적이 공무원의 승진 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---

2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3) 의안번호 2719호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5차 교육위원회 (2021.9.8.)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<b>총계</b>	<b>7,722</b>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
교육감	1		1		
<b>일반직 계</b>	<b>7,125</b>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42		31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2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
<b>별정직 계</b>	<b>8</b>				
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<b>특정직 계</b>	<b>588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37				